



-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1.



남현주 의원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남현주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을 “법”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004
----------	----------

발의일자: 2023. 01. 20.

발의자: 남현주, 박종길, 권숙자,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황국주, 임미연,  
이영빈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함(안 제1조)
- 나. 「긴급복지지원법」 을 “법”으로 약칭함(안 제3조)
-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 제목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을 “(지원대상자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을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서구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14. (생 략)</p>	<p>제1조(목적) ----- ---제2조제8호----- ----- ----- ----- ----- ----- -----.</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 -----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p>	<p>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p>
<p>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생 략) 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p>	<p>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 ----</p>

# 관계법령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생략>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